

# 2011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(육계분야)

농림수산식품부

##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사업

### I. 사업개요

#### 1. 목적

- 대표조직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수급조절, 경쟁력 제고, 품질관리, 마케팅 등 품목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, 조직화를 통해 규모의 영세성을 극복하는 등 급속한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자율적 대응능력 확보

#### 2. 근거법령

-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, 제11조

#### 3. 성과목표 및 지표

- '12년까지 품목별 대표조직 30개소를 육성, 자율적 품목 발전 기반 구축

성과지표	2011 목표치	최근 3개년 실적			지표산출 시기	측정방식
		2008	2009	2010		
대표조직수	30	(2)	(6)	29	'12.1	○ 품목별 대표조직수 총계

#### 4.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2008년까지	2009년	2010년	2011년	2012년이후
합 계			6,000	6,000	6,000
보 조			6,000	4,200	3,000
자부담			-	1,800	3,000

### II.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

#### 1. 사업대상자

- 법령에 의거 설립된 품목별 대표조직

- 영농·영어조합법인, 농·어업회사법인, 조합공동사업법인, 품목조합연합회, 민법 제32조에 의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, 자조금관리위원회

## 2. 지원자격 및 요건

- 품목 대표성 확보
    - 사업을 신청한 전년(전년자료가 없을 경우 최근년)을 기준으로 전국생산량(액) 대비 회원구성원 생산량(액) 비율 또는 전국출하량(액) 대비 회원 출하량(액) 비율이 50% 이상인 조직
    - 해당품목 유통, 가공·소비, 수출 등에 관여하는 자에게도 회원가입이 허용된 단체(품목특성을 고려예외 인정 가능, 정관에 명시)
    - 농림수산식품부 장관(품목담당과)이 대표조직으로 인정한 조직
  - 전문성·책임성 구비
    - 독립된 사무국과 1인 이상의 전담인력 확보
    - 법령에 의해 설립된 조직
  - 운영기반 및 목적 실현 가능성 확보
    - 조직 및 품목발전에 관한 장·단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함
    - 사업목적 실현을 위한 재정적 기초 마련 및 사업수행능력 확보
- 〈지원제외〉
- 3년내 자율적 운영방식으로 전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조직(재정 등)
  - 품목 대표성이 없이 지역 등을 기반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
  - 독립 사무소가 확보되지 않은 조직

## 3. 지원대상

- 단일품목으로 구성된 품목별 대표조직
  - 단, 품목특성상 상호 작목대체가 빈번하여 단일품목 설립이 어려운 경우에는 품목연합대표조직도 지원가능(예: 무·배추대표조직)
  - 생산방식에 따라 여러 개의 품목을 통합한 조직은 제외(예: 친환경농산물)

## 4.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
- 이사회(자조금 관리위원회 포함) 의결을 거쳐 기본사업비와 품목발전사업비로 구분 사용

### 【기본사업비】

- 회원 전산네트워크 구축 등 조직화 사업, 사무국 직원 인건비 등 조직운영 기본경비, 품목별 비용절감운동본부 및 연구회 활동 경비 지원(자료수집, 세미나 등)

\* 인건비는 기본사업비의 50% 한도내에서 지원

### 【품목발전사업비】

- 수급조절 : 출하·관측정보 수집 및 분산 시스템 운영, 유통명령, 유통협약 추진사업, 회원 생산·유통 실적관리 D/B 구축 등
- 품질관리 : 표준규격 개선 및 디자인 개발, 품질향상을 위한 신기술 보급, 소비자반응조사 및 이력추적 모니터링 등
- 회원교육 : 신기술 및 품질향상 교육, 유통개선 및 수출관련 교육비, 품목별 비용절감 사례발굴·전파·교육, 우수조직 사례 현장 교육 등
- \* 해외연수는 국고지원 한도 15백만원이내에서 참가자가 50% 이상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지원(사무국 직원 1인은 예외)
- 품목R&D : 중장기 대표조직 및 품목발전 방안 연구 용역, 생산·유통단계별 애로요인 해소를 위한 신기술 및 제품개발 연구, 생산·유통실태 조사 등
- 시장개척·홍보 : 품목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, 사이버 거래, 안전성 검사, 자체 브랜드 개발, 시장개척 활동 등
- \* 자조금사업비를 지원하는 품목은 시장개척·홍보 사업 및 인건비와 사무실 임대료 지원 제외
- 상기 세부사업 범주에 포함하기 곤란한 특이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(농식품부 품목담당과 의견을 유통공사에 제시) 후 지원여부 결정

## 5.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

- 지원형태 : 국고보조 70%, 자부담 30%
- 국고보조는 대표조직의 당해년도 사업계획과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및 자부담 확보 등을 검토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
- 자부담은 회비 등 자체 적립금 확보내역(통장 사본 등) 또는 확보계획을 사업계획 제출 시 제시하고, 자조금사업 시행품목은 자조금 조성액과 대표조직 자부담액을 분리(별도 계정으로 관리) 하여야 함

## 6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- 조직당 지원한도 : 210백만원(조직별 사업계획 평가결과로 차등 지원)

- 기본사업비 지원규모 : 지원한도의 40% 이하
  - \* 기본사업비 지원규모를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해당 조직은 품목담당과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사업담당과(채소특작과)에 승인 요청
- 품목발전 사업비 지원규모 : 지원한도의 60% 이상
- 자조금사업 시행 조직은 기본사업비 중 인건비와 사무실 임대료 지원은 제외하며, 자조금 사업 보조금 지원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조직의 대표조직 육성사업비 지원한도는 50백만원 이하로 제한
- 특정 품목의 수급조절을 위해 품목담당과에서 대표조직 사업비 증액 지원을 요구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음

IV.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

1. 2012년도 사업수요조사

- 2012년도 사업에 신규로 참여하고자 하는 조직은 품목담당과의 검토를 거쳐 사업담당과(농식품부 채소특작과)와 지원요건 여부 등 사전 협의

2.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

- 2011년도 시행지침을 준용하여 신청하되, 2012년 사업 국고보조율은 50%로 조정
  - \* 2013년부터 대표조직 육성사업은 중단, 자조금사업으로 통합 지원할 계획

담당기관	담당과	담당자	전화번호
농림수산식품부	채소특작과	과장 김정욱	02-500-2011
		사무관 김도범	02-500-2013
농수산물유통공사	유통조성팀	팀장 성창현	02-6300-1581

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

I. 사업개요

1. 목적

- 유가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과 에너지이용 효율화 등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 지원인 지열 및 목재펠릿 난방시설과 에너지 절감시설을 보급

2. 근거법령

-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 보급 촉진법 제4

조 제2항

-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 제1항

3. 성과목표

- 2017년까지 농어업 분야에 지열·목재펠릿 난방기·에너지 절감시설 9,500ha 보급

성과지표	2011	최근 3개년 실적			지표산출 시기	측정방식
	목표치	2008	2009	2010		
· 연간 에너지 절감량 (천TOE)	51	-	5	5	2012. 2월	○ 지열면적(ha)×65.6TOE + 목재펠릿면적(ha)×108.66TOE + 절감시설면적(ha)×43.44TOE * 지열면적 ha당 기준 - 737kw(난방용량)

4.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2009년까지	2010년	2011년	2011년 이후	계
합계	52,000	265,500	224,060	979,000	1,520,560
- 국고	15,600	139,650	125,450	533,700	814,400
- 지방비	15,600	59,650	45,130	213,700	334,080
- 융자	10,400	13,100	16,700	35,800	76,000
- 자부담	10,400	53,100	36,780	195,800	296,080

II.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

1. 사업대상자

- \* 내재해형규격 지원 우대
- \* 경영정보 미등록 농업경영체는 제외(농어업경영체 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·8조)
  - <지열냉·난방 시설 설치 지원 사업>
- 난방이 필요한 시설을 운영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법인, 생산자단체
- 축산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 증 양돈업 및 닭(오리) 사육업을 등록 한 자
- 수산업법 및 내수면 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면허, 허가, 신고를 취득하여 양식어업(종묘생산어업 포함)을 경영 중인 자
- 신규 온실 설치 예정 농업인과 농업법인
  -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없이 신규 온실 설치 예정인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온실 시공업체와의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원
- 시설 부지 등을 임차한 농어업인의 경우 임차 잔여기간 10년 이상(한국농어촌공사의 경영회생자원을 받는 자는 7년)이어야 함.

- 단, 어업인의 경우 임차 잔여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함.

〈목재펠릿 난방기 및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지원 사업〉

- 시설원예(채소·화훼·과수)농업인(법인)

2. 지원대상 요건 및 지원시설

〈지열냉·난방 시설 설치 지원 사업〉

가. 사업신청을 위한 요건

- 지원 대상시설 요건과 생산물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
- 축산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 중 양돈업 및 닭, 오리 사육업을 등록한 자
  - 돼지사육농가 : 사육규모 1천두 이상 농가(종돈장, AI센터 등은 사육규모 제한 없음)
  - 닭사육농가 : 축산업(닭사육업)을 등록하고 사육규모 30,000수 이상인 농가
  - 오리사육농가 : 축산업(오리사육업)을 등록하고 사육규모 5,000수 이상인 농가
-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면허, 허가, 신고를 취득하여 양식어업(종묘생산어업 포함)을 경영 중인 자
  - 개별어장을 기준으로 하되, 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일 경우 단일 어장으로 간주(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어장 내에 2인 이상의 지분 또는 행사자 등 경영체가 달라서 전원 동기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각 지분 또는 행사자가 경영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단일어장으로 간주)
  - \* 농수산업법인은 농림수산업실시규정 별표4의 지원요건을 충족하여야 함.

나. 대상시설 요건

- 다음 시설규모로서 우수한 성능의 보온 피복을 갖춘 농어업 시설
  - 농작물재배온실 면적 1,000㎡ 이상
  - 버섯재배사 면적 600㎡ 이상
  - 무창계사로서 30,000수 이상 사육 시설
  - 무창오리사로서 5,000수 이상 사육시설
  - 1,000두 이상 사육하는 사업장의 무창분만돈사, 무창임신돈사
  - 해수 또는 담수 직(간)접이용 양식 시설로서 수조 전체 환수량 100㎡/일 이상 또는 수 면적(㎡) 600㎡이상인 시설. 단, 종묘생산어업의 경우에는 수면적300㎡ 이상인 시설.

- \* 농작물 재배온실의 범위는 철골조온실, 파이프비닐 연동형온실을 말한다.

- 에너지이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의 단열기준을 갖추어야한다.

- 온실의 외부 피복재는 외피복 1중, 내부 피복재는 다겹(2중) 이상
- 버섯재배사의 판넬 구조는 최소 두께 50mm 이상(측벽 및 천장 포함)
- 무창계사·돈사·오리사육시설의 판넬 구조는 최소 두께 50mm 이상(측벽 및 천장 포함)
- \* 보온시설 보강 및 설치비용은 본 사업비로 집행할 수 없음
- 지열 열교환용 설비의 설치를 위한 시설 토지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.
- \* 지열열교환용 설비 설치를 위한 토지확보 권장 면적
  - 수평 밀폐형은 온실 재배 면적의 160%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
  - 수직 밀폐형과 수직개방형(SCW)은 온실 재배 면적의 30%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
  - 축산 및 수산관련 시설은 시설면적의 30%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

다. 대상 생산물 요건

- 지열 이용설비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높일 수 있도록 난방을 필요로 하는 작물을 선택(붙임 참고1)하고, 버섯 재배사의 경우 대상작물은 느타리, 팽이, 새송이 버섯으로 정함.
- 공정 육묘장은 대상작물 기준에도 불구하고 신청할 수 있음

라. 지원 시설

- 지열난방 시스템을 위한 토목, 천공, 그라우팅, 열교환기, 히트펌프, 배관, 기존난방 연계 설비, 전기용량 증설, 제어 등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에 한함
  - 양돈 및 계사시설의 경우 내부 공급관(덕트) 설비 공사를 추가 포함(기존 환기시스템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야 하며 연계를 위한 공사는 제외)
  - 폐열원을 이용하는 농어업시설의 경우 사업신청자의 신청에 따라 열교환기와 히트펌프를 활용한 시스템(취수시설 제외) 구성으로 지원 가능
  - \* 지원 시설 중 히트펌프는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에서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성

농인증시험을 받은 제품을 사후관리 보장 등을 위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으로 부터 품질보증을 받음

〈목재펠릿 난방기 설치 지원 사업〉

- 시설원예용 목재펠릿 난방기(온풍기 · 보일러)
  - 공기기관의 성능시험을 통과하여 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농업용 목재펠릿 난방기(열효율이 표시된 제품)에 한해 보급

〈에너지 절감시설 설치지원 사업〉

- 다겹보온커튼, 순환식 수막재배시설, 열회수형 환기장치, 자동 보온덮개, 배기열 환기장치, 시간계측기

3. 지원방식 및 지원기준

〈지열냉 · 난방 시설 설치 지원 사업〉

- 지원형태 : 국고보조 60%, 지방비 20%, 자담 20%
- 사업시행기관 : 시장 · 군수(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 시행)
- 사업 진행 중 설계변경 사유로 인한 지열 형식변경 또는 사업비 증가, 사업 취소가 필요한 경우, 한국농어촌공사의 검토결과에 따라 해당 시장 · 군수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또는 취소
- 사업진행 중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사업비는 해당 투입비율(국고보조 60%, 지방비 20%, 자부담 20%)대로 조정
  - 국고지원 또는 지방비의 추가 투입 없이 계획을 변경하여 초과되는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추진
-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 설치장소가 행정구역상 시군이 다른 경우는 사업장 소재 시군에 신청함(해당 지자체장으로부터 지방비 확보 및 지원 가능성 사전 확인)

\* 불가항력의 사유란 사업대상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한 사태를 말하며 지질, 용수 등 공사현장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른 경우 등을 말한다.

〈목재펠릿 난방기 및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지원 사업〉

- 지원형태 : 예특회계 국고(보조 30%, 용자 20%), 지방비 30%, 자담 20%
  - 용자금리 : 3% (3년거치 7년 분할상환)
  - 대출취급기관 : 농협중앙회, 사업주관기관 : 시장 · 군수

4. 지원한도 기준 및 범위

〈지열냉 · 난방 시설 설치 지원 사업〉

- 사업비 : 시설부하용량(kW) × 적용단가

구분	적용단가(천원/kW)	
설비 형식	수직밀폐형	1,638
	수평밀폐형	1,260
	개방형(SCW형)	1,508
	열교환기-히트펌프	1,207

\* 시설부하용량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최대부하용량의 70% 용량으로 결정

〈목재펠릿 난방기 설치 지원 및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지원 사업〉

세부사업	단가	지원 내용
• 목재펠릿 난방기 보급	1.5억원/ha	• 목재펠릿난방기 및 설치비 지원 • 난방방식(온풍 및 온수)에 따라 사업비 차등지원 • 열효율 : 온수 80%, 온풍 70% 이상
	수분권취식 15천원/㎡	• 수분흡수 방지를 위한 코팅 보온재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보온커튼 • 보온재는 열전도율 0.020w/m·K이하
	에인식, 외부권취식 13천원/㎡	• 가온시설이 설치된 온실에만 지원 • 알루미늄 스크린은 유리온실 위주로 설치 * 보온효과 향상을 위해 보온율은 점진적으로 강화
• 다겹 보온커튼	일루미늄 13천원/㎡	
	5천원/㎡	• 순환식 수막재배 시설 • 열회수형 환기장치 • 열회수형 환기장치 개별지원
• 순환식 수막재배 시설 • 열회수형 환기장치	5천원/㎡	
• 자동 보온덮개 • 배기열 회수장치	2.5천원/㎡	• 작물별 · 시설별 특성에 맞는 자동보온덮개, 배기열 회수장치 지원
• 시간 계측기	400천원/개	• 유류를 측정할 수 있는 시간계측기 부착 지원

IV.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 조사 및 기타 사항

1. 2012년도 사업수요 조사

- 2012년도 사업계획 통보 및 사업신청(2011.10~11월)

2.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

- 신청서 제출기관 : 시장 · 군수
- 제출기한 : 2011.10~11월
- 신청자격 : 2011년도 신청자격 확인(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통보)

담당기관	담당과	담당자	전화번호
농림수산식품부	축산경영과(축산)	과장 노수현 사무관 변동주	02-500-2058 02-500-2064

- 다음호에 계속...